

## 韓國產業規格 (Korean Industrial Standards)

 <b>KS A 14012</b>	<b>환경심사지침-환경심사원자격기준</b>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uditing- Qualification criteria for environmental auditor	제정 : 1997. 6. 3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97-108 호
--	---	---

### I. 서문

1. 이 규격은 1996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4012(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uditing - Qualification criteria for environmental auditor)를 번역해서 기술적 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 규격이다.

이 규격의 부속서 A, B와 C는 단지 참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 II. 개요

환경 경영 체제 및 환경 심사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 심사원 자격 기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 규격은 그러한 지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 심사자는 외부 심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능력이 필요하나, 아래 사항에 의거 이 규격에 명시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 a) 조직의 규모, 성격, 복잡성 및 환경적 영향
- b) 조직 내의 관련 전문성 및 경험의 축적도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환경 심사원과 선임 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내부 심사원 및 외부 심사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심사반의 선정과 구성에 관한 기준은 이 규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관련 기준은 **KS A 14011**을 참조한다.

**비고** 이 규격은 특별히 환경 심사에 대한 일반 원리(**KS A 14010**)와 환경 경영 체제 심사에 관한 지침(**KS A 14011**)과 관련된 KS 규격들과 병행해서 채택되었다. 이 규격은 KS에서 다른 형태의 환경 심사에 대한 세부 지침을 채택하는 경우 개정될 필요가 있다.

**2. 인용 규격** 다음 규격들은 본문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격 발행 시점에는 아래의 발행본이 유효했다. 모든 규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규격을 근거로 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래에 제시된 규격의 유효본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최신 한국산업규격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 KS A 14001** : 1996 환경 경영 체제 - 사용 지침
- KS A 14010** : 1997 환경 심사 지침 - 일반 원리
- KS A 14011** : 1997 환경 심사 지침 - 심사 절차 - 환경 경영 체제 심사

**3.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르는 외에 **KS A 14010**과 **KS A 14011**에 규정된 정의를 적용한다.

**비고** 환경 경영에 대한 용어 및 정의는 **KS A 14050**에 제시된다.

#### 3.1 환경 심사원 환경 심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3.2 선임 환경 심사원** 환경 심사를 관리하고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3.3 학 위**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통상 중등 교육을 마친 후 최소한 3년 간의 공식적인 정규(full-time) 교육이나 이와 동등한 비정규(part-time)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획득한다.

**3.4 중등 교육** 초등 단계를 마친후 받게 되는 국가 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대학 혹은 유사 기관에 입학하기 바로 직전에 받는 교육

**4. 학력 요건 및 실무 경력** 심사원은 적어도 중등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심사원은 적절한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러한 실무 경험은 다음 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환경 과학 및 기술

b) 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 환경적 측면

c) 환경 법률, 규정 및 관련 문서의 요구 사항

d) 환경 경영 체제 및 심사 규격

e) 심사 절차, 과정 및 기법

중등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만을 이수한 심사원은 최소 5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다만 위의 a)~e)에서 언급된 분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식적인 정규 대학 교육 또는 비정규 대학 교육을 통해 적절히 이수한 자에게는 단축된 실무 경력 기간이 요구될 수 있다. 실무 경력 기간 단축은 상기의 분야를 다룬 전체 교육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단축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5. 심사원 훈련** 위의 4.에서 언급한 기준 이외에도, 심사원은 환경 심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공식 훈련과 실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심사원이 소속해 있는 조직 또는 외부 조직이 제공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획득한 능력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실례가 **부속서 A**에 수록되어 있다.

**5.1 공식 훈련** 공식 훈련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a) 환경 과학 및 기술

b) 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 환경적 측면

c) 환경 법률, 규정 및 관련 문서의 요구 사항

d) 심사 기준이 되는 환경 경영 체제 및 심사 규격

e) 심사 절차, 과정 및 기법

공인 시험에 합격 또는 관련 기술 자격증을 획득함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분야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공식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5.2 실무 훈련** 심사원은 최소 4회에 걸친 총 20일간의 환경 심사에 대한 실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무 훈련은 선임 심사원의 감독과 지도하에 전체 심사 과정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 훈련은 연속적인 3년 이내의 기간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6. 학력, 실무 경험 및 훈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 각 개인은 학력, 실무 경험 및 훈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7. 개인적 자질 및 기능**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자질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개념과 의견을 구두 및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b) 사교성, 기질 및 청취력 등 심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인 관계 기술

c) 심사원의 책임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 d) 심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 조직의 기술
- e)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 f)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습과 문화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8. 선임 심사원** 선임 심사원은 심사 과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총괄, 통솔하는 데 필요한 상기의 개인적 자질 및 기능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심사원이어야 하며, 더불어 다음의 추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심사원에게 요구되는 심사 일수 이외에, 최소 3회에 걸친 총 15일간의 환경 심사 전과정에 참여하고
  - 그 3회 중 적어도 1회는 선임 심사원의 감독과 지도하에 대리 선임 심사원으로 활동 또는
  - 품질 보증 프로그램하에서 획득한 환경 심사 성과에 대한 면담, 관찰, 인용 및 또는 평가 등을 통하여 심사 프로그램 통솔 또는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입증
- 선임 심사원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추가 기준은 연속적인 3년 이하의 기간 내에 충족시켜야 한다.

**9. 능력 유지** 심사원은 다음 분야에 대한 최신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그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 a) 관련 환경 과학 및 기술 측면
- b) 시설 운영과 관련된 해당 기술적, 환경적 측면
- c) 환경 법률, 규정 및 관련 문서의 요구 사항
- d) 심사 기준이 되는 환경 경영 체계 및 관련 심사 규격
- e) 심사 절차, 과정 및 기법

**10. 준수 사항** 심사원은 KS A 14010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 언 어** 심사원은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없이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그 사람은 심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부속서 A (참고) 환경 심사원 자격에 대한 평가

이 부속서(참고)는 본체 및 부속서(규정)와 관련된 사항을 보충하는 것으로 규정의 일부는 아니다.

**A. 1 일반 사항** 이 부속서는 이 규격에 규정된 환경 심사원 자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A. 2 평가 과정** 이 규격은 심사원 자격에 대한 평가 과정을 수립, 운영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과정은 심사원의 심사 프로그램 관리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적일 수 있으며, 그 목적은 환경 심사원의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 과정은 심사 활동에 대한 최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 심사원 평가를 위한 과정은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A. 3 학력 요건, 실무 경험, 훈련 및 개인적 자질에 대한 평가** 환경 심사원이 이 규격에 기술된 학력 요건, 실무 경험, 훈련 및 자질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평가 과정은 다음 중 일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심사원 지원자와의 면담
- b) 서면 및 또는 구두 심사 또는 적절한 다른 방법

- c) 심사원 지원자의 문서 작업에 대한 검토
- d) 전직 고용주, 동료 등과 논의
- e) 역할 분담 활동
- f) 실제 심사 과정에서 동료의 관찰 사항
- g) 이 규격에 규정된 학력, 실무 경험 및 기록 검토
- h) 전문 자격증 및 자격 조건 검토

**부속서 B (참고)**  
**환경 심사원 등록 기관**

이 부속서(참고)는 본체 및 부속서(규정)와 관련된 사항을 보충하는 것으로 규정의 일부는 아니다.

**B. 1 일반 사항** 이 부속서는 환경 심사원 등록의 일관성 보장을 위해 등록 기관 육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B. 2 심사원 등록**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환경 심사원 등록을 실시하기 위하여 등록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기관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음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등 기관은 직접 환경 심사원 등록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규격의 기준에 따라 환경 심사원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을 인정할 수 있다.

등 기관은 이 규격의 부속서 A에 수록된 기준에 의한 심사원 자격 평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그 평가 과정은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등 기관은 이 규격에 규정된 기준을 현재 만족시키는 환경 심사원의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부속서 C (참고)**  
**참고 문헌**

(1) **KS A 14050 환경 경영 - 용어와 정의<sup>(1)</sup>**

주<sup>(1)</sup> 발행 예정인 규격이다.